해창만 수상태양광 송전철탑 설치 '반발'

고흥군, 해창만 담수호 수면임대로 95㎿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조계산에 8~9기 송전철탑 건설에 따른 환경·건강권 침해 '논란'

전남 고흥군해창만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해창만 들녘.고흥군 해창만 수상 태양광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박동해)는 9일 지분 22% 주민 참여형해창만수상태양광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남 고흥군 해창만 담수호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구간 송전철탑 공사가 포함돼 군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송전철탑 건설 예정지 주변 지역민에 따르면 해창만에서 추진되는 태양광발전소는 고흥군 풍양면 율치리 조계산 일대를 지나는8~9기의 송전철탑이 포함됐다.

주민들은 고압 송전철탑이 설치될 경우 상당한 생활 피해가 예상되고 자연경관 훼손 및 농가와 축사에 악영향이 예상되는데도 주민 의견 수렴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도내 무안과 신안군 등 운영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330만㎡(100만 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100~200MW)는 송전선로 지중화가 추진됐으나 고흥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구나 해창만의 소유주인 고흥군이 개발허가권자이면서도 송전철탑 공사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정확한 군의 견해를 내놓지 않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함만 더하고 있다.

급기야 주민들은 해창만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면서 9개의 송전철탑이 조계산을 지나면 일대의 자연환경과 경관 파괴, 축산 농가의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주민 건강권과 자연 생태계를 위해서 수상태양광 발전소와 연결되는 송전선로의 지중화가 절실하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군수와 군의회 앞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군 의회는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중화를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군정질의를 펼친 바 있으나, 군은 송전철탑과 관련한 사전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해창만 수상태양광발전 우선협상대상자인 발전사업자 측은 송전철탑 설치안으로 한전과 발전허가 및 송전용량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군민들의 지중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철탑 건설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송전철탑을 반대하는 한 주민은 "전국의 지자체들은 송전철탑 1개만 세워져도 주민 건강권 침해를 걱정하면서 피해 여부를 우선 살핀 뒤 주민과 협의 및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지만, 고흥군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흥 군의원과 고흥 도의원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흉물인 송전철탑 대신 지중화 공사를 택하는데, 고흥군만 지중화를 포기하고 송전철탑을 고집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철탑은 지중화에 비해 25%의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수십억 원의 특혜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송전철탑 설치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바 없다"면서 "주민들이 송전철탑 반대 및 지중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군청에 제기한다면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작년 1월 2000억 원대의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수면 임대 우선 협상대상자로 임대제안서를 낸 5개 업체 가운데 한 곳을 선정했다.

해창만 담수호 100ha에 95MW 규모의 발전을 하는 시설로 군은 직접 투자 없이 자산 임대 방식으로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나눠 주는 전국 최초의 주민참여형(주민참여율 22%)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주민 몫을 놓고 반발이 거셌다.

이후 설계과정서 송전철탑이 포함되면서 지중화가 아닐 경우 사업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수능 종료 2분전 종소리…학생들, 유은혜 장관 형사고소

종료시간 4시보다 2분 앞서 끝 종소리

피해자들 '사후지침 매뉴얼 마련 못 해'

수능 시험 당일 강서구 한 고등학교에서 4교시 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학생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형사고소했다.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매뉴얼 등을 미리 마련하지 못해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27일 강서경찰서에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수능 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의 시험 시간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2분 일찍 울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4시에 울려야 할 타종 소리가 3시58분에 울린 것이다.

이 때문에 시험실에서는 시험지를 걷어가는 등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잘못을 인지한 시험장에서는 2분의 시간을 더 부여해 오후 4시2분에 해당 과목 시험이 종료됐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난 후 수험생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잘못 울린 타종으로 큰 혼란이 초래됐다고 호소하며 단체 소송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 등이 수능 당시 타종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사후지침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문제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잘못 건드려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교육청 측은 "종이 잘못 울렸으면 추가 시간을 주는 게 맞다"며 "다양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건별로 지침이 있을 수는 없다. 상황에 맞게 감독관 판단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기동취재본부

장애 여성 숨진 광주 연립주택 불…"전기적 요인 발화"

지적장애 여성이 숨진 광주 연립주택 화재는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8일 소방당국·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전기공사와 남구 월산동 모 연립주택 한 세대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한 뒤 '가전제품 주변 그을림이 심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은 거실 텔레비전 앞 케이블이 타고 그을린 점을 토대로 전기적 요인에 따른 불로 추정하고 있다. 방화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과수가 수거한 전기 설비 정밀 감식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지난 26일 오전 4시 36분께 남구 연립주택 1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나 안방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A(43·여)씨가 연기에 질식,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남편 B(54)씨는 화재 직후 대피했다. A씨는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성서 화물차 이정표 충돌…2명 사상

28일 오전 4시 48분께 전남 보성군 지방도 845호선 편도 1차선 도로에서 A(62)씨가 몰던 1t 화물차량이 도로 이정표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수석에 탄 A씨의 아들 B(32)씨도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로 결빙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내와 불륜 의심해 지인 흉기로 찌른 40대, 2심도 징역형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지인과 다른 일로 언쟁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2시 45분께 자신의 집 앞길에서 흉기와 나무 몽둥이로 지인 B(49)씨를 찌르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중 다른 일로 자신을 찾아 온 B씨와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와 말다툼 하던 중 부엌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나왔으며, 위기감을 느낀 B씨는 주변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에서 나무 몽둥이를 꺼내 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로 위협만 하려 했다. B씨가 나무 몽둥이로 먼저 공격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찌른 것이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B씨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A씨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서 작업 중인 크레인차량 전도…2명 부상

28일 오전 10시3분께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 차량이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크레인 바스켓에서 작업을 하던 A(53)씨 등 2명이 약 3~4m 높이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이들은 119 출동 당시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으며, 급히 제주시내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아파트 외벽 방수작업 중이던 크레인 차량은 중심을 잃어 옆 건물 1층 상가 간판 윗공간으로 전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